

● 제320회 ●
서울특별시의회(임시회)
제3차 보건복지위원회

서울특별시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검 토 보 고 서
(의안번호 : 1036)

2023. 9. 11.

보 건 복 지 위 원 회
수 석 전 문 위 원

[김춘곤 의원 대표 발의]

의안번호 1036

I. 조례안 개요

1. 제안경위

가. 발 의 자 : 김춘곤 의원 (찬성 48명)

나. 발의일자 : 2023년 8월 14일

다. 회부일자 : 2023년 8월 21일

2. 제안이유

- 「한의학 육성법」의 개정에 따라 서울시장이 “서울시 한의학 육성계획”을 수립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한 후 시행하기 위함임

3. 주요내용

- 시장이 수립한 서울시 한의학 육성 계획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. (안 제6조제2항 신설)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한의학 육성법」

나. 예산조치 : 비용추계 비대상 사유서 참조

다. 입법예고 : 2023. 8. 24. ~ 2023. 8. 28.

라. 기 타 : 신·구조문 대비표

II. 검토의견 (수석전문위원 주병준)

1 개정안의 취지

- 본 개정(안)은 상위법인 「한의약 육성법」 제8조의 개정 사항을 「서울특별시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 (“이하 동 조례”）」에 반영하여 ‘법적의무사항’인 ‘서울시 한의약 육성 지역계획’ 수립과 시행을 담보하고자 하는 것임.

2 개정안의 주요 내용별 검토

가. 서울특별시장의 작성한 ‘서울시 한의약 육성계획’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는 사항 관련 (안 제6조제2항)

1) 개정(안)의 내용

- 본 개정안은 “서울특별시장의 작성한 ‘서울시 한의약 육성계획’을 의무적으로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제출”하게 하는 것으로, 이를 통해 서울시의 ‘한의약 육성계획’ 수립과 이행의 책임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임.

현 행	개 정 안
제6조(한의약 육성 계획의 수립·시행 등) ① (생략)	제6조(한의약 육성 계획의 수립·시행 등) ① (현행과 같음)
<신설>	<u>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수립한 계획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</u>
② (생략)	③ (현행 제2항과 같음)

2) 검토의견

-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‘한의학육성 지역계획’ 작성 및 시행 의무는 2003년 「한의학 육성법」의 최초 제정 당시부터 동 법률 제8조1)에 포함되어 있었고 이와 더불어 동 조례에는 최초 제정 당시인 2018년부터 제6조2)에 포함되어 있었음.
- 그리고 “한의학 육성 지역계획”의 기준이 되는 보건복지부의 “한의학 육성 종합계획”은 「한의학 육성법」 제6조에 따라 5년마다 지속적으로 수립되어왔으며, 현재 제4차 종합계획(붙임1 참조)을 시행중에 있음.

“보건복지부 - 한의학 육성 종합계획”

제1차 한의학 육성발전계획 (2006~2010)

제2차 한의학 육성발전계획 (2011 ~ 2015)

제3차 한의학 육성발전 종합계획 (2016 ~ 2020)

제4차 한의학 육성발전종합계획 (2021~2025)

「한의학 육성법」

제6조(한의학 육성 종합계획의 수립)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한의학의 육성·발전 등에 관한 종합계획(이하 “종합계획”이라 한다)을 제3항에 따른 한의학육성발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.

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
1. 한의학 육성·발전에 관한 기본목표와 방향
2. 한의학 연구의 기반 조성에 관한 지원제도
3. 한의학 인력의 양성 및 그 활용 방안
4. 한의학기술 향상과 지원 방안
5. 한의학의 세계화를 위한 방안
6. 한의학 분야의 남북 교류협력 촉진
7. 그 밖에 한의학의 육성·발전에 관한 사항

1) 한의학육성법 [시행 2004. 8. 7.] [법률 제6965호, 2003. 8. 6., 제정]

제8조 (한의학육성지역계획의 수립·시행)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종합계획이 확정된 때에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을 감안하여 한의학육성지역계획(이하 “지역계획”이라 한다)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2) 서울특별시 한의학 육성을 위한 조례 [시행 2018. 3. 22.] [서울특별시조례 제6839호, 2018. 3. 22., 제정]

제6조(한의학 육성 계획의 수립·시행 등) ① 시장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의 실정을 고려하여 서울시 한의학 육성 계획(이하 “계획”이라 한다)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 ② (이하 생략)

- 이에 반해, ‘한의학육성 지역계획’은 법률 및 조례상 ‘규정형식’이 “해야만 한다”라는 의무규정 형식으로 존재했음에도 불구하고, 서울특별시를 비롯한 대부분 지방자치단체가 ‘한의학육성 지역계획’ 수립에 소극적이었음
 - (’22년 10월 기준) ‘지역계획’을 수립·시행한 지자체는 4개 지자체 충청남도·부산광역시·인천광역시·경기도로 파악됨³⁾.
- 이에 국회에서는 오랜 시간 개선되지 않았던 지방자치단체의 ‘한의학 지역계획’ 미수립 문제를 시정하고자 「한의학 육성법」 제8조를 개정하여 의무적으로 ‘지방자치단체장이 기 작성한 한의학 육성 지역계획’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제출하도록 강제하였음.

「한의학 육성법」 [시행 2024. 1. 19.] [법률 제19556호, 2023. 7. 18., 일부개정]

제8조(한의학 육성 지역계획의 수립·시행 등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종합계획이 확정된 때에는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을 고려하여 한의학 육성 지역계획(이하 “지역계획”이라 한다)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수립한 지역계획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[신설]

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관 또는 단체를 지정하여 지역계획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. [제8조제2항 -> 제8조제3항으로 이동]

「서울특별시 한의학 육성을 위한 조례(안)」

제6조(한의학 육성 계획의 수립·시행 등) ① 시장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의 실정을 고려하여 서울시 한의학 육성 계획(이하 “계획”이라 한다)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수립한 계획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[신설]

③ 시장은 기관 또는 단체를 지정하여 계획을 수행하게 할 수 있으며, 이에 필요한 행정적·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. [제6조제2항 -> 제6조제3항으로 이동]

- 따라서, 동 조례 개정(안)은 첫째, ‘한의학 지역계획’ 작성 의무 불이행을 시정하고자 하는 상위법 개정의 취지를 반영했다는 점과 둘째, 서울특별시 역시 “한의학 육성 지역계획”을 미수립해왔던 지방자치단체라는 점을 고려할 때, 그 개정의 취지에 타당성이 존재한다고 사료됨.

3) [출처] 제400회 국회(정기회)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「한의학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」 검토보고서 발췌

- 다만, 한의약과 관련하여 현재 보건복지부가 지자체에 공통적으로 국고를 보조하여 시행하는 사업이 없고, 각 지방자치단체가 그 실정에 따라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게 되어 있으므로,
- 향후 서울특별시 차원에서 “한의약 육성 지역계획” 수립시에 기 수행중인 1)어르신 한의약 건강증진사업, 2)한의약 난임치료 지원 사업, 3) 다둥이맘 산후회복지원사업(한의원부인과 진료 산후회복 및 치료 진료비 지원), 4) 지역사회 통합 건강증진 사업영역(13개 사업 中 한의약건강증진사업) 등과의 연계와 통합을 고려할 필요성이 존재한다고 사료됨.

나. 동 조례의 시행일을 공포후 6개월이 경과한 날로 규정하고 있는 부칙 관련 (부칙)

1) 개정(안)의 부칙의 내용

- 본 개정(안)의 부칙은 “동 조례”의 시행일을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로 명시하여 조례 효력 발생일을 유예하고 있음.

2) 검토의견

- 본 개정(안)의 부칙은 개정된 상위법인 「한의약 육성법」(2023.7.18. 일부개정)의 시행일이 2024년 1월 19일임을 고려하여, 상위법 내용을 반영한 동 조례(안)의 시행일을 상위법 시행일 이후로 하려는 것으로서 바람직하다고 사료됨.

※ 집행기관 의견: **원안가결**

- 본 조례 개정안은 상위법(한의약 육성법) 개정에 따라 해당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이행 책임을 강화하는 것으로, 본 조례 개정안에 동의함

3 종합의견

- 서울특별시장의 작성한 ‘서울시 한의약 육성계획’ 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는 사항 관련 (안 제6조제2항)
 - ‘한의약육성 지역계획’은 법률 및 조례상 의무적으로 수립해야하는 계획임에도 그동안 서울시 및 여러 지방자치단체가 상당 기간동안 동 계획을 수립 하지 않았음.
 - 이에 국회에서는 이러한 ‘한의약 지역계획’ 미수립 문제를 시정하고자 「한의약 육성법」 제8조를 개정하였으며, 동 조례(안) 역시 이러한 상위법 개정 사항과 그 취지를 반영한 것임.
 - 따라서, 동 조례 개정(안)은 첫째, ‘한의약 지역계획’ 작성 수립 불이행을 시정하고자 하는 상위법 개정의 취지를 반영했다는 점과 둘째, 서울특별시의 “한의약 육성 지역계획” 작성 이행을 강화하는 조례(안)이라는 점에서, 그 개정의 타당성과 취지가 있다고 사료됨.
- 동 조례의 시행일을 공포후 6개월이 경과한 날로 규정하고 있는 부칙 관련 (부칙)
 - 본 개정(안)의 부칙은 개정된 상위법인 「한의약 육성법」 (2023. 7. 18. 일부개정)의 시행일이 2024년 1월 19일임을 고려하여, 상위법 내용을 반영한 동 조례(안)의 시행일을 상위법 시행일 이후로 하려는 것으로서 바람직하다고 사료됨.

【참고1】

제4차 한의약육성종합계획 4대 목표 및 추진전략4)

제4차 종합계획 비전과 전략

비전



한의약을 통한 건강, 복지 증진 및 산업 경쟁력 강화



01

한의약 중심 지역 건강 복지 증진

- ① 한의약 건강돌봄 활성화
- ② 한의약 일차의료 및 공공의료 강화

02

한의약 이용체계 개선

- ① 한약 접근성 및 신뢰성 제고
- ② 한의 의료서비스 체계 개선

4대 목표
및
추진 전략

03

한의약 산업 혁신성장

- ① 한의약 과학화를 위한 연구개발 지원 강화
- ② 한의약 산업 혁신성장 기반 마련

04

한의약 글로벌 경쟁력 강화

- ① 한의약 글로벌 교류 협력 활성화
- ② 한의약 산업 해외진출 확대

[참고2]	지방자치단체 한의약육성 지역계획 수립 현황⁵⁾
--------------	---

구 분	2022년 지역계획 수립 주요 내용
충청남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한의약건강증진프로그램 운영 · 생애주기별 사업 운영 체계화 및 11개 보건소 사업 연계 추진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* 공주, 보령, 아산, 서산, 논산, 계룡, 당진, 금산, 부여, 홍성, 태안 - 청소년 월경곤란증 한의약 치료지원 사업 운영 - 난임부부 한방치료지원사업 운영 - 유통 한약제제 수거·검사 및 감시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20품목 수거 후 검사 진행 → 검사 진행중
부산광역시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한방진료실 운영 - 한방 건강증진사업, 한방 난임지원사업, 한방 치매예방사업 - 공공보건의료기관 한·양방 협진체계 구축 - 의료관광객 유치를 위한 한방특화상품 개발 및 프로모션 - 한약재 판매·유통관리 및 신속 수거·검사
인천광역시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한의약 육성 계획수립 및 성과관리 - 유통 한약재 수거·감시 관리 - 보건소 및 보건지소 한의과 진료실 운영 - 지역사회 통합 한의약 건강증진사업(통합건강증진사업 연계) - 한방 HUB 보건소(한의약 활용 건강증진 사업) - 한의 경로당 주치의 사업 -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 사업
경기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한방난임 지원사업 - 의료취약지역 무료이동진료 제공 - 유통 의약품(한약재) 등 수거검사 - 한의사 공중보건의사 배치

5) 출처: 보건복지부 및 국회 검토보고서 발췌